

#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

#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091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4. 2. .  
제 출 자 : 인천광역시장

## 1. 개정사유

가. 과세대상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요트회원권의 취득세 과세대상 추가, 등록면허세 현실화를 위한 정액세율 인상 및 등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지방소득세 세율 규정 등 「지방세법」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취득시기와 관련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항으로 간략하게 정비하고, 요트회원권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추가함(안 제5조).
- 나.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종별 세율을 현행 3,000원부터 18,000원 까지에서 4,500원부터 27,000원까지로 인상함(안 제9조).
- 다.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(종합소득, 양도소득) 및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규정을 신설함(안 제16조).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련법령 검토와 발취사항
- 나.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취득한 날부터 60일 [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,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(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)] 이내에”를 “법 제20조에 따라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12. 골프회원권·승마회원권·콘도미니엄회원권·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및 요트회원권: 골프장·승마장·콘도미니엄·종합체육시설 및 요트장의 명칭·소재지·소유자·이용기간 및 연간이용일수

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9조(세율) 법 제34조에 따른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(이하 이 절에서 “등록면허세”라 한다)의 세율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.

구분	제1종	제2종	제3종	제4종	제5종
세율	27,000원	18,000원	12,000원	9,000원	4,500원

제8장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## 제8장 지방소득세

제16조(세율)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.

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.

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.

#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     행	개   정   안
<p>제5조(신고 및 납부) ① 취득세의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<u>취득한 날부터 60일[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,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신고일부, 각각 6개월(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)]</u> 이내에 다음 사항과 관계 증빙서류를 갖추어 해당 물건의 과세표준에 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및 법 제1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해당 과세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<u>군수·구청장</u>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.</p> <p>1.~11. (생략)</p> <p>12. <u>골프회원권·승마회원권·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: 골프장·승마장·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의 명칭·소재지·소유자·이용기간 및 연간이용일수</u></p> <p>②~⑥ (생략)</p> <p>제9조(세율) 법 제34조에 따른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(이하 이 절에서 “등록면허세”라 한다)의</p>	<p>제5조(신고 및 납부) ① ----- ----- 법 제20조에 따라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1.~11. (현행과 같음)</p> <p>12. <u>골프회원권·승마회원권·콘도미니엄회원권·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및 요트회원권: 골프장·승마장·콘도미니엄·종합체육시설 및 요트장의 명칭·소재지·소유자·이용기간 및 연간이용일수</u></p> <p>②~⑥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9조(세율) ----- ----- -----</p>

현 행						개 정 안					
세율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.						-----.					
구분	제1종	제2종	제3종	제4종	제5종	구분	제1종	제2종	제3종	제4종	제5종
세율	18000원	12000원	8000원	6000원	3000원	세율	27000원	18000원	12000원	9000원	4500원
<p>제8장 지방소득세(소득분)</p> <p>제16조(세율) 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지방소득세 소득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.</p>						<p>제8장 지방소득세</p> <p>제16조(세율)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.</p> <p>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.</p> <p>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.</p>					

##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계법령	<input type="checkbox"/> 「지방세법」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제20조(신고 및 납부)</li> <li>○ 제34조(세율)</li> <li>○ 제92조(세율)</li> <li>○ 제103조의 3(세율)</li> <li>○ 제103조의 20(세율)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“내용은 별지 작성”</p>
관련법규 정비대상	“해당사항 없음”
특이사항	“해당사항 없음”

# 관련법령 발췌사항

## □ 「지방세법」

제20조(신고 및 납부)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 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17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)부터 60일[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,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(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)]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.

### ②~④ (생략)

제34조(세율) ①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(이하 이 절에서 “등록면허세”라 한다)의 세율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.

구분	인구 50만 명 이상 시	그 밖의 시	군
제1종	67,500원	45,000원	27,000원
제2종	54,000원	34,000원	18,000원
제3종	40,500원	22,500원	12,000원
제4종	27,000원	15,000원	9,000원
제5종	18,000원	7,500원	4,500원

### ②~⑤ (생략)

제92조(세율) ① (생략)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소득에 대한



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.

③~⑤ (생략)

제103조의3(세율) ①~③ (생략)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.

제103조의20(세율) ① (생략)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.

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 1. 비용발생요인

- 재정수반사항 없음.

## 2. 비용추계서 첨부 근거규정

- 「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

## 3. 미첨부 사유

- 본 개정안은 「지방세법」 개정에 따라 취득시기 및 세율규정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서
- 요트회원권에 대한 과세대상 신설은 우리 시에 요트장이 소재하지 아니하여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,
- 등록면허세(면허분) 세율인상에 따른 세입증가는 1억원 미만(연간 총세수 2억원 규모)의 소액으로 미첨부함.  
※ 등록면허세는 자치구세이며, 군지역에서만 광역시세로서 우리 시는 강화·옹진군만 해당됨.

## 4. 작 성 자

안전행정국 세정과장 정 철 환